

# “2011년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 공감에서 고민까지”

## 두 번째

싸리

영등포를 비롯한 전국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시위가 한창이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성매매집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대책이 막막한 여성들의 저항이 5월 한달 내내 계속되고 있다. 비슷하게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기에도 정부는 집결지 폐쇄조치를 공언하여 업주와 여성들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여성들은 성매매 외에 선택할만한 다른 경제적 안전망 없이, 즉각적 폐쇄 조치에 부응하는 전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떠안고 있었다. 당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 단속에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이 흐름은 부산 완월동과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라는 요구에까지 이른다. 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으로 수용되어 여성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토록 했었다.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 부분적으로나마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했다는 점은 2011년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시위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4년과 다르게 현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과 단속이다. 성매매집결지 도시재개발 계획은 그녀들에 대한 한 가락의 지원정책이 전무한 채로, 그 공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핑크빛 전망만을 약속하며 선언되고 있다. 누적된 위기의식과 함께 갑작스럽게 시작된 단

속으로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 2011년,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요구사항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터’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을 중심으로 모인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은 △생계대책 마련 △3년간 단속 유예기간 약속 △이주대책 마련 △현실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여성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가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요구들은 재개발과 단속으로 생계수단이 막막해진 상태에서 사회적 출구를 찾기 위한 절실한 저항이며 몸부림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반드시 “성매매를 지속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만 해석되는 것은 성매매 업주들과의 이익과 맞닿아 있어 문제적이다. 이미 많은 보도 자료에서 여성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 일을(성매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회,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여성노동의 대안으로서 성매매가 존재하는 문제적인 사회를 꼬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눈 돌리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다른 방식의 생계수단의 쟁취는 불가능한 허상일 뿐인가. 2011년, 다시 터져 나오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전업지원 정책”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지난 3~4년간 ‘부족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여성단체를 못 믿겠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라도 여성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년의 단속 유예기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의 요구 중 가장 핵심 사안은 3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약속하는 것이다. 3년의 단속 유예기간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번 시위에 앞서 있는 여성들보다 더 이익을 취하게 될 주체들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바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지역과 업종을 변화시킨다.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면 여성들은 안정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게 될까. 3년 전 폐쇄 반대를 외치던 여성들이 같은 집결지에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006년~2009년 청량리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지역과 업종을 변화시키면서 매우 유동적인 성노동자성을 구축하며, 각지에 포진되어 있는 여성단체와 성노동자 단체를 오가면서 삶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단속을 피해, 장사가 더 잘 되는 지역을 찾아, 또는 업주나 사채업자로부터 도망다니거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고자 지속적으로 익명적 공간을 찾아 지역을 빈번하게 옮겨다닌다. 예를 들면, 평택에서 매달 <민성노련> 노조 회원비를 납부하던 여성이 몇 개월 사이에 다른 성매매 집결지에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소위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채업자에 쫓겨 A라는 지역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던 여성이 몇 개월 후 같은 방식으로 B지역의 단체와 연대한다. 성매매 여성이 무소속이면서 익명적 지대에 있다는 특성이 활용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임시적인 시간과 장소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3년의 단속 유예기간 동안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삶을 보장받는

이들은 그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성매매 업주들이다. 3년 단속유예가 여성들에게보다 업주들에게 더욱 절실한 이유다. 게다가 단속으로 인해 여성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의 목을 조여 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빛과 고액의 월세 장사를 고안해 낸 업주들의 횡포가 크다. 업주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약점과 성매매 여성의 관계를 전면내세우면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의 이익이 획득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 숨어있는 업주들, 그들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보도 자료에서 시위 대표자의 인터뷰는 업주들이 맡고 있다. 전면적인 시위는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켜보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들은 성매매 업주들이다. 주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한터’ 강현준은 2004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이끌고 ‘성매매방지법 반대’ 집회를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성매매 업계’의 대변인이다. ‘한터’는 선불금 등 누적된 빚에 못이겨 업소를 탈출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전국적으로 감시·관리하면서 소위 이 여성들의 신상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으로 여성을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유도한 바 있으며(2004.10.19. 경향신문, 「성매매 여성 ‘블랙리스트’ 업주들 조직적 관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이익을 포주들이 제몫을 찾게 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성매매 산업에서 손을 털겠다”고 언론에 밝히며 교묘하게 포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2007.1.12, 한겨레21, 「보도 그 뒤 포주들의 제몫찾기 운동?」).

더구나 성매매 업주 조직은 끊임없이 여성단체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방해했던 집단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방해했던 업주 집단이 지금은 마치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면서, 성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려는 것처럼 보이면서 ‘성노동자 운동’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를 통해 가장 이익을 얻는 또 다른 주체인 성매매 업주의 이해관계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은 ‘성산업인’이라는 전제로 여성들과 자신들을 협력관계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업주들에게 있어 성매매 여성들의 전업은 자신들의 이익창출 통로를 잃게 되는 계기일 뿐이다.

###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반발과 성매매 여성의 요구사항은 분리되어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의 생존권과 여성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성매매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이익이 극대화될 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동시에 성매매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을 규제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규제방식이 성판매자, 성구매자를 타겟으로 한 현장적발 방식이었고, 이것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성매매 여성에 기생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업주에 대한 소득조사, 세금조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규제 등과 같은 규제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반에 터져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을 지원하는 자활지원 정책으로 수용된 바 있다. 그것이 설사 현실적이지 못했고, 한계가 많은 정책이었다 해도, 성매매 구조 안에서 생존권 보장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잘 보여주었던 계기였다고 본다. 7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성매매만이 여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적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여성들과 업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의 위치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 다른 방식의 생계수단으로의 자유로운 이동,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